

# 기안용지

본용기로 문서번호	통건보30500- 1167	(전화: 362-4289 )	시행상 특별취급
보존기간	영구·준영구. 10.5.3.1.	본 부 장	
수신처 보존기간		<b>초 록</b>	
시행일자	90. 7.	1990. 7. 26	
보조 기간	차 장: <i>[Signature]</i>	협 조 기 관	협조부 행정과장 <i>[Signature]</i>
	모목부장 <i>[Signature]</i>		총무부장
	2과장 <i>[Signature]</i>		법무담당 심사팀무과장 <i>[Signature]</i>
기안책임자	박종오 (오형진)	시설계획과장 <i>[Signature]</i>	경미과장 <i>[Signature]</i>
경유 수신 참조	각 안 참조	발신 명의	발 수
제 목	도시계획 사업 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		
(제 1안) 내부결재			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2호 (89.12.29)로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변경			
결정및 동대문구 고시 제 4호 (90.1.20)로 지적송인된 동부고속화 도로 건설공사			
(한천로 구간)의 시행을 위하여,			
2. 도시계획법 제 25조 규정에 이거 실시계획을 신청코저 동법 제25조			
2의 규정에 이거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하고,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청취코자 하오며,			
3. 공람방법은 토지및 건물소유자 도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함은			
물론 동법 제 28조및 동시행령 제 28조 규정에 의거 공람하며 <span style="float: right;">1</span>			
4. 공고방법은 2개 일간신문에 각각 1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.			

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2호 (89.12.29)로 도시계획시설 (도로)변경결정 및 동대문구 고시 제 4호 (90.1.20)로 지적승인된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공사 (한천로구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.

2. 토지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,
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(토목부)및 동대문구청 (건설관리과)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가. 공람장소 : 종합건설본부 (토목부)

동대문구청 (건설관리과)

나. 공람공고기간 : 1990. 7. - 1990. . .

1990. 7.

서울특별시 장

" 공 램 개 요 "

가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이문동 94-6 - 동대문구 위경동 7-34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· 종류 : 도시계획 사업 (도로)
· 명칭 :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공사 (한천로구간)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라. 사업개요 : 도로개설 폭 24-38 M, 연장 820 M 지하차도 2개소
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공사착공일로부터 91.12.31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 본부 (토목부) 및 동대문구청 (건설관리과)에 비치된 토지 및 건물조서와 같음.
아.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(토목부) 및 동대문구청 (건설관리과) 에서 비치한 대장과 같음. 끝.
(제2안)
수신 서울특별시장
참조 공보관
제목 신문공고 게재의뢰
1. 도시계획법 제 28조 및 도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이거 아래사항을 2개 일간신문에 각각 1회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단 1일 2개 신문에 게재)

가. 일간신문 게재

- 공고일자 : 90. 7 . - 90. . .
- 공고회수 및 방법 : 2개 일간신문에 각각1회
- 공고안 : 별첨
- 지출방법 : 사후 청구에 의해 지출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공고 제 호 사본 각 1부

2. 신문공고안 4부. 끝.

(제 3안)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참조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

제목 도시계획 사업 (도로) 실시계획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2호 (89.12.29)로 도시계획 시설 (도로)변경결정  
및 동태문구 고시 제 4호 (90.1.20)로 지적승인된 동부고속화 도로 건설공사(한천로  
구간) 도시계획 사업 (도로)의 실시계획 인가를 독하기 위하여 별첨 공고문

같이 공고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공고문 사본및 도면 1부. 끝.

(제4안)

수신 동태문구청장



건설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공사 구역내 편입재산 표시

소재지	지목	편입면적	소유자	
			주소	성명

수신처 : 토지조사 개별 이기시행. 끝.

(제6안)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참조 시민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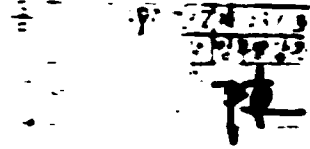
제목 신문공고 번호 삽입

1. 도시계획 사업 (도토)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고번호

및 신문공고 번호 삽입을 의뢰 하오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내용 : 도시계획사업 (도토) 실시계획 공람공고

첨부 : 서울특별시 공고문 1부. 끝.



공 고 (안)

도시계획 사업 (도로)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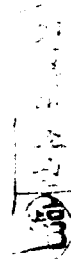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62호 (89.12.29)로 도시계획 시설 (도로) 변경결정및 동대문구 고시 제 4호 (90.1.20)로 지적승인된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공사 (한천로구간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.
2.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,
3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및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가. 공람장소 :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 
 동대문구청 건설관리과

나. 공람공고기간 : 1990. 7. . - 1990. . .

1990. 7.

서울특별시장



"공 램 개 요"

- 가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 이문동 94-6-동대문구 휘경동 7-34
- 나. 사업의 종류및 명칭
  - .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도로)
  - . 명칭 : 동부고속화도로 건설공사 (한천로구간)
- 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- 라. 사업개요 : 도로개설 폭 24-38M, 연장 820 M, 지하차도 2개소
- 마. 사업착수및 준공예정일 : 공사착공일로부터 91. 12. 21.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(토목부)및 동대문구청 (건설관리과)에 비치된 토지및 건물조서와 같음.
- 사. 토지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, 성명 :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(토목부)및 동대문구청 (건설관리과)에서 비치한 대장과 같음.